

1. 개정이유

디지털 문화유산 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디지털문화유산팀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에 신설하고,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로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설치한 문화유산교육팀을 폐지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문화유산협력팀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신설하며, 문화재청 본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8명(5급 6명, 7급 2명)을 조정 전 당초 직급으로 환원하고, 문화재청 본부와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2명(6급 5명, 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새로 상향조정(5급 5명, 6급 5명, 7급 2명)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정원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 ~ 1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디지털문화유산팀”으로, “학예연구관”을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9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디지털문화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문화유산 제도·정책 총괄 및 기획
2.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계획 수립·시행
3. 문화유산 데이터표준화 및 품질관리
4. 문화유산 데이터 댐 기획·구축·관리 및 활용
5. 문화유산 빅데이터 보존·관리 및 활용
6. 문화유산 지능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운영 관리
7. 문화유산 인공지능 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구축 및 운영
9.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및 활용

10.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2호의5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표목록”을 “대표목록 행사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지원 및 활성화”를 “지원”으로 한다.

3.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12의2.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8조제2항 중 “문화유산교육팀”을 “문화유산협력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교육팀장”을 “문화유산협력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지원
2. 문화유산 민·관협력 및 교육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3. 문화유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모델 개발 등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4. 문화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기반 조성 및 지원과 통계·실태 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5. 문화유산 민간참여 문화경영 및 지역사회·주민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형 클라우드 펀딩 등 민간참여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7. 문화유산 보호 관련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과 문화재지킴이 운동 확산·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업의 문화유산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용과 문화유산 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 교육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지원

12. 문화유산 공교육 모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문화유산 교육 지원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유산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 및 사회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전산 시스템 관리

제20조의2제4항제5호 중 “지원 및 점검”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4. 전수교육관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7.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점검에 관한 사항

제23조 중 “전시홍보과장을”을 “전시교육과장을”로 한다.

별표 5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9”를 “6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7”을 “4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를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30”을 “2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9”를 각각 “28”로 하며,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15 중 총계 “45”를 “4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1”을 각각 “42”로 하며, 행정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2”를 “3”으로 하며,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를 신설한다.

별표 15의2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으로 각

각 신설되는 디지털문화유산팀과 문화유산협력팀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문화유산팀장과 문화유산협력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각각 정보화담당관과 활용정책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9명, 별표8의2의 정원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별표5의2의 정원(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

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5의2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과 별표15의2의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명과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u> · <u>혁신행정담당관</u> · <u>법무감사담당관</u> 및 <u>정보화담당관</u> 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u>학예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② ----- <u>기획재정담당관</u> · <u>혁신행정담당관</u> · <u>법무감사담당관</u> · <u>정보화담당관</u> 및 <u>디지털문화유산팀</u> ----- ----- <u>학예연구관</u> 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관한 사항</u> 총괄	<삭제>
10. ~ 15. (생략)	10. ~ 15. (현행과 같음)
16. <u>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삭제>
17. <u>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u>	<삭제>
18. ~ 20. (생략)	18. ~ 20. (현행과 같음)
<신설>	⑦ <u>디지털문화유산팀</u> 장은 다음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생략)	사항을 분장한다. 1. <u>디지털 문화유산 제도·정책 총괄 및 기획</u> 2. <u>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계획 수립·시행</u> 3. <u>문화유산 데이터표준화 및 품질관리</u> 4. <u>문화유산 데이터 댐 기획·구축·관리 및 활용</u> 5. <u>문화유산 빅데이터 보존·관리 및 활용</u> 6. <u>문화유산 지능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운영 관리</u> 7. <u>문화유산 인공지능 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u> 8. <u>문화유산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구축 및 운영</u> 9. <u>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및 활용</u> 10. <u>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에 관한 사항</u>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생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2의4. (생략)	1.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금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신 설>

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활용·홍보 및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5. ~ 12. (생 략)
<신 설>

13. (생 략)

14.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및 활
성화에 관한 사항

15. ~ 18. (생 략)
⑤·⑥ (생 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생 략)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
· 국제협력과· 근대문화재과·
세계유산정책과 및 문화유산교
육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
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임
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학

<삭 제>

3.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4. ----- 대표목록
행사 지원, -----

5.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3. (현행과 같음)

14. ----- 지원-----

15. ~ 1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유산협
력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임
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⑧ 문화유산교육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교육에 관한 중장
기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지원

2. 문화유산 교육 법령 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3. 문화유산 교육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4.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및
역사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 건
립 및 콘텐츠 구축 총괄

6. 문화유산 보호 관련 민· 관
협력 모델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문화유산협력팀장-----
-----.

1.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 관협력 및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
립· 조정 및 총괄· 지원

2. 문화유산 민· 관협력 및 교
육 법령 제·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3. 문화유산 사회적 경제 활성
화 계획· 모델 개발 등 정책
수립· 조정 및 총괄

4. 문화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기반 조성 및 지원과
통계· 실태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조정 및 총
괄

5. 문화유산 민간참여 문화경영
및 지역사회· 주민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형 클라우드 펀딩
등 민간참여 및 투자 활성화
에 관한 정책 수립· 조정 및
총괄

7. <u>문화재지킴이 운동 확산·지원 및 교육</u>	7. <u>문화유산 보호 관련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과 문화재지킴이---교육에 관한 사항</u>
8. 「 <u>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u> 」 운용에 관한 사항	8. <u>문화유산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9. <u>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u>	9. <u>기업의 문화유산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u>
<신 설>	10. 「 <u>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u> 」 운용과 <u>문화유산 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11. <u>문화유산 교육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지원</u>
<신 설>	12. <u>문화유산 공교육 모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사항</u>
<신 설>	13. <u>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문화유산 교육 지원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14. <u>문화유산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 및 사회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u>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② (생 략)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신 설>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1. <u>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전산 시스템 관리</u>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5. <u>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u>	④ ----- -----.
6.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7. <u>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u>	5. ----- 지원-----
8. ~ 13.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u>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u>
14.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14. <u>전수교육관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u>
7. <u>무형문화재 기록정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u>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⑤ ----- -----.
	1. ~ 6. (현행과 같음)
	7. <u>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점검에 관한 사항</u>

<u>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u>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u>10.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u>	<u><삭 제></u>
11.·12. (생략)	11.·12. (현행과 같음)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⑥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 영 지원</u>	<u><삭 제></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u>8.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 량 강화를 위한 지원</u>	<u><삭 제></u>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 화재연구소장 및 국립해양문화 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을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 ----- ----- ----- <u>전시교육과장을</u>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문화 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문화 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 로 신설되는 문화유산교육팀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한 다.</u>	<u><삭 제></u>
<u>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문화유산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활용정책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 한다.</u>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 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 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문 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에 따른 정원(5급 5명)으로서,</u>	<u><삭 제></u>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5의2의 정원(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임업주사보 1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5의2의 정원(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으로 본다.

[시행일: 2018. 12. 28.]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 행정서기 2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별표 5의2의 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원 7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별표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15의2의 정원 1명(시설서기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

<삭 제>

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